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2025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3. 적용법규: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4.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5.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시송달 대상 : 25명(붙임 내역 참조)
  7. 안내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8. 문 의 처: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담당 김혜령 02-2116-4316)
-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